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1호

##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이종화 · 김경희 · 김남수 · 김상현 · 김수혜  
문순규 · 백승규 · 서명일 · 심영석 · 이우완  
이원주 · 전홍표 · 정순옥 · 진형익  
한은정 의원(15명)

찬 성 의 원 : 구점득 · 김현일 · 남재욱 · 성보빈  
최정훈 의원(5명)

## 1. 제안이유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보호 등”을 “보호 및 지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를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u>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8조(실태조사) ① -- <u>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실시할 ---.</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u></p>
---	--

###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법률 지원 등)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